

7.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25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- 상정일자 :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2차 교육위원회(2019년 12월 2일),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형구)

### □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소속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기르고,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조성

### □ 주요내용

- 2020년도 기금 출연 한도액 : **74억 2,890만원**

## 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### ○ 주요 내용

- ▶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

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·지원하기 위하여,

- ▶ 구 삼영초 매각대금(2차 분납금) 55억원, 대구교육사랑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5억원, 금고협력 사업비 4억원, 통합학교(죽전중, 서남중) 지원금 10억 2,890만원을 재원으로 「지방재정법<sup>7)</sup>」 제18조 및 「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74억 2,890만원을 한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

**【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재원】**

(단위 : 천원)

출 연 기 관	사 업 명	출연금	비 고
대 구 광 역 시 인재육성장학재단	구 삼영초 매각대금	5,500,000	2차 분납금
	법인카드 사용적립금	500,000	
	농협 금고협력사업비	400,000	
	통합학교 지원금	1,028,900	죽전중, 서남중
	계	7,428,900	

○ 검토 결과

- ▶ 본 출연 계획안은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

7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▶ 아울러, 2013년 12월에 설립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4년부터 경제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, ‘성적우수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’을 비롯하여 갑작스런 경제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‘SOS 장학금’, ‘학업중단 위기극복학생 장학금’, ‘통합학교 학생 장학금’, ‘인문계고 3학년 저소득층 석식 지원금’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
- ▶ 다만, 장학금 지급 학생 수가 2014년도 7명(500만원)에서 2018년도 556명(3억 7,200만원)으로 증가하였으나,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장학재단 출연금의 운용소득(이자)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여전히 환경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▶ 따라서, 앞으로 장학사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외부기금 등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### 【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조성 현황 】

(2019.11. 기준, 단위 : %, 백만원)

구 분	조 성 현 황			집행액	현재액
	교특회계 출 연 금	외부기금 수입 등	계		
장학금 조성	18,527 (91.1)	1,818 (8.9)	20,345 (100.0)	923	19,422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<p>○ 장학재단 출연 재원 중 농협 금고협력사업비 금액이 4억원인데, 평상시 교육청 예치규모를 감안할 때 농협 출연금 유치를 더 할 필요성은 없는지?</p>	<p>○ 농협 금고협력사업비는 교육청 금고선정 시 종합적으로 여러 지원 사항과 함께 약정된 것으로 금고 협력사업비외에 다른 지원도 감안해야함. 금고 협력사업비 비율은 향후 금고선정 시 더 고민하도록 하겠음</p>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 6. 수정안요지

-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